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은하 의원)

의안 번호	21-23
----------	-------

발의년월일: 2021. 2. .

발의자: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진천,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1.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은 200명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나.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6조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1. 2. 23. ~ 2.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주민수의 19세이상 200”을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1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u></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마 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u>주민수</u> 의 <u>19세이상 200인</u> 이상으로 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u></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 ----- <u>주민의</u> <u>수는 19세 이상 150</u>----- --.</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관련조문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의 19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이광재 (☎8992)